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715 |
|----------|-----|

2017. 10. 24(화)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박한범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17년 9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3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한범 의원)

### 가. 제안사유

- 도민감사관 운영 중 도민감사관의 정의, 도민감사관의 구성, 제보 사항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과 도민의 정의 (안 제2조)
- 도민감사관 구성 (안 제4조)
  - 시·군별 2명 이상 8명 이하, 성별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
- 제보사항 등 처리 (안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민감사관 운영에 있어 도민감사관의 정의, 도민감사관의 구성, 제보사항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안 제2조에서 도민감사관과 도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 둘째, 안 제4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구성을 40명 이내로 하도록 하되 시·군별로 2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 셋째, 안 제7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구성에 있어 시·군별 형평성과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도민감사관의 제보·건의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도민감사관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 715 호              |
| 의 결<br>연 월 일 | 2017년 월 일<br>(제359회) |

##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발 의 자 | 박한범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

#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한범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715 |
|----------|-----|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발 의 자 : 박한범, 최광옥, 연철흙,  
박봉순, 이언구, 임병운,  
윤홍창

### 1. 개정이유

- 도민감사관 운영 중 도민감사관의 정의, 도민감사관의 구성, 제보사항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과 도민의 정의 (안 제2조)
- 도민감사관 구성 (안 제4조)
  - 시·군별 2명 이상 8명 이하, 성별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
- 제보사항 등 처리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감사관과 협의함.
- 다. 입법예고 : 2017년 9월 20 ~ 9월 25일(5일간).

##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감사에 참여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행정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도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2.“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하거나 위법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
2.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한 감사
3. 위법·부당사항 및 불편·불만사항 제보
4. 공무원관련 비위 품위손상행위 제보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도민감사관은 시·군별로 2명 이상 8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3.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등)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도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충청북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6조(감사 참여)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도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도민감사관의 의견 개진 시 가급적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제척 및 기피)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거나 피수감기관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①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 도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민감사관의 제보·건의서

|                                                                                                              |    |      |    |  |
|--------------------------------------------------------------------------------------------------------------|----|------|----|--|
| 건명                                                                                                           |    |      |    |  |
| 도민감사관                                                                                                        | 성명 | (서명) | 전화 |  |
|                                                                                                              | 주소 |      |    |  |
| 제보내용                                                                                                         |    |      |    |  |
|                                                                                                              |    |      |    |  |
| 처리방법                                                                                                         |    |      |    |  |
|                                                                                                              |    |      |    |  |
| <p>상기 사항을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보·건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    |      |    |  |
| <p>※ 제보·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    |      |    |  |

##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북도 주관으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 ) 관련 감사 과정에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I.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에 참여한다.

I. 본인은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I. 본인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  
여는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